

어 선 세 무 행 정(II)

수협중앙회 조사부

차 장 고 석 환

— 목 차 —

1. 어선의 취득과 취득세·등록세
2. 어선의 건조와 세금
3. 어선에 대한 재산세와 임대소득세

1. 서 론

어선을 새로이 건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취득한 어선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어선등기법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원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그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차량과 증기, 그리고 어선등 선박과 광업권, 어업권까지도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그의 취득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논하는 부동산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취득세를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어선을 취득한 사람은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선적항을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어선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또 총톤수가 20톤 이상이 되는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먼저 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선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세란 함은 권리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률상의 일정한 자격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에 부담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어선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유통거래에 수반하는 담세력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포착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유통세(流通稅)라고도 합니다. 이하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 요약해서 설명코자 합니다.

2. 취득세부담

가. 취득세가 과세되는 어선의 범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어선이라 함은 기선, 범선, 전마선등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어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박법, 선박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선적항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소형선박의 선적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20톤미만의 선박과 그밖의 선박도 지방세법상 취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취득이란 다음의 납세의무발생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그 범주에 관하여 상당히 확대 해석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발생

어선을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의 취득행위가 과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뜻에 해당되고 또 취득으로 보는 범위와 취득의 시기(時期)가 지방세법의 규정과 합치하는가를 우선 따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취득의 의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지방세법상 취득의 의의(意義)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매매(賣買), 교환

(交換), 증여(贈與), 기부(寄附)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이에겐 어선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의 원시취득(原始取得), 어선을 타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승계취득(承繼取得)의 유형은 물론, 값을 치르고 취득하는 유상취득(有償取得), 값을 치르지 않고 취득하는 무상취득(無償取得)도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의 취득의 의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취득의 의의를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판단되는 가름걸이기 때문입니다. 취득의 의의에 관해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실과세(事實課稅)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으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어선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이나 선박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등기, 등록, 신고, 기타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이전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의미하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에는 등기, 등록 등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황부과(現況賦課)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선취득의 경우 공부(公簿)상에 등록 또는 등재된 선박의 선질, 용도, 적재정량 기타의 내용이 사실상의 그것과 상이(相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2) 지방세법상 취득의 범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어선의 취득범위는 통상 사용하는 취득의 범위와는 달리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에는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에 관계없이 단순히 어선의 가액(價額)이 증가하는 경우도 취득의 범위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취득의 범위를 따져야 하는 이유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표준이 어디까지냐 즉, 취득세를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선의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에 의한 취득은 승계취득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이 중에서도 어선의 매매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둘째, 어선의 건조는 원시취득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에 대하여는 승계취득에 한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어선은 건조등이 완료되어 실수요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승계취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문에 의한 건조로서의 원시취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조선업자(造船業者)의 선박건조는 주문자의 선박건조의 대행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선업자를 원시취득자라고 해서 취득세를 과세한다면 조선업자와 승계취득한 주문자 모두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조선업자와 주문자에게 모두 과세한다는 것은 하나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세법이론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와 반대로 주문에 의하지 아니한 조선업자의 어선건조와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건조하는 어선 실수요자의 어선건조는 원시취득자로서의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어선의 종류를 변경하여 어선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어선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질과 용도 그리고 기관과 적재정량 등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 어선을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지급시 연부금액만큼 어선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지방세법상 어선의 취득시기는 사실과세의 원칙에 따라 어선을 사실상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각각의 취득유형에 적합한 취득시기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취득시기를 엄격히 따져야 하는 이유는 언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기한을 일실(逸失)한 경우에는 취득세 이외에 20%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유형별로 규정한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가를 치르고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과세표준(지방세법상 결정하는 선박의 취득가액)을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국가로부터 어선을 취득하는 경우등 취득가액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일로 보는 날짜이전에 이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댓가를 치루지 않고 어선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일로 보는 날짜이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셋째, 교환의 경우: 어선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교환하는 어선의 제공이 있는 때에 어선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른 시기에 교환할 어선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어선의 사실상 명도시기를 어선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연부취득의 경우: 선박을 연부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며, 연부금지급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어선건조의 경우: 어선의 건조가 사실상 완성되어 운항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어선에 있어서는 건조가 완료되어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어선의 종류변경의 경우: 어선의 선질 등 변경의 경우에는 사실상 변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사실상 변경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公簿)에 의해서 입증되는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일곱째, 수입(輸入)에 의한 취득의 경우: 수입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어선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고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면장 발급일을 승계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다. 취득세의 감면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감면에는 여러 규정이 있으나 어선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감면규정은 별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의 각 규정에 통용되는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道), 시(市), 군(郡) 등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특수한 사유를 들어서 감면조례(減免條例)를 제정하여 취득세를 감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시, 도별로 감면내용을 달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의 감면조례는 조례의 한시성(限時性) 즉 시행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취득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직권(職權)에 의해서 또는 신청(申請)에 의해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는 서울특별시시장, 직할시장,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어선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이에 세율을 곱하면 곧바로 산출세액이 나올 수 있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어선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어선가액(漁船價額)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연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받고자 할 때에는 선박을 취득한 자가 미리 지방세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선취득자가 자진신고하는 과세표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어선취득자의 신고가 전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과세징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징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자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 즉 어선취득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① 국가·도·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어선을 취득한 경우
- ② 공매방법에 의하여 어선을 취득한 경우
- ③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취득한 경우
- ④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의 장부, 계약서 및 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어선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마. 취득세의 세율

어선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즉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

바. 취득세의 납부

(1) 취득세의 납세지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어선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나 직할시장이지만 통상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지는 어선소재지의 시·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동성이 있는 어선을 취득한 자가 어선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가

되므로 이전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 취득세의 자진납부 및 징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어선을 취득한 사람이 어선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지에 자진신고서를 기재하여 자진신고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납부할 취득세액과 동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더 추가한 고지서를 어선취득자에게 고지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자진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轉賣)한 경우에는 80%의 가산세까지 합산한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어선의 등기·등록과 등록세

가. 등록세의 특성

등록세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그 납부하는 방법이 인지세와 동일하게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에 일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세는 등기·등록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인지세와는 달리 세금납부가 철저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20톤 미만의 어선에 관한 등록은 일종의 사법사무 또는 행정사무이지만 등록세는 이들 사무의 수수료가 아닌 어디까지나 조세입니다.

등록세는 75년까지는 국세의 일종이었으나 76년부터는 지방세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취득세와 함께 등록세는 지방세중도세(道稅)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나. 등록세의 납세의무

등록세는 사적거래(私的去來)상의 증거능력(제 3자에 대한 대항능력), 기타 일정한 효력을 가지고 법률관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어선에 관하여 등기를 하거나 등록하는 행위(行爲) 또

는 사실(事實)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라 함은 어선 등기 또는 20톤미만 어선의 등록을 하는 자가 이에 해당됨으로 이들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선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세납부명세서를 3통 작성하여 그중 1통을 소관 시·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납부서에 기입된 세입징수관의 직인을 날인받아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선의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어차피 등록세를 자진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어선의 등기·등록시의 등록세 과세표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표준 즉 어선 등기·등록시의 등록세과세표준은 어선가액(漁船價額)입니다. 이때의 어선가액이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등기·등록신청인의 신고어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서의 신고어선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의 어선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고어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어선가액이 등기·등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깃가표준액(후면자료 참조)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선깃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선깃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규칙 제40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장·군수가 매년 2회씩 조례(條例)로서 정하는 날 현재의 어선의 선질별, 용도별, 기관의 종류 및 동력장치 유무등에 의한 건조가격(建造價格)을 산출한 후 여기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계산한 어선깃가액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어선깃가액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 고시하는데 이렇게 고시된 가

액을 깃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시장·군수가 어선의 과세깃가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및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결정일 전 60일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의 등록세과세표준 결정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등기 또는 등록신청인이 시장·군수가 결정한 어선깃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가액을 신고한 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후 시·군 당국이 어선을 판 상대법인의 장부를 조사하였더니 사실상 사고 판 가액 즉 어선등기·등록신청인의 어선취득가액이 자진신고한 가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등록세를 계산한 후 이미 자진납부한 등록세를 차감한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그동안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음처럼 그 결론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즉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비록 어선의 실제 취득판매가액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과세할만한 현행 지방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없으며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더라도 법인이 취득한 경우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깃가표준액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하게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다시 등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라. 어선의 등록세율

지방세법에서는 어선에 관한 등록세의 세율을 「20톤이상 어선등기」와 「20톤미만의 어선등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선에 관한 등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선등기시의 등록세율:

어선등기시의 등록세율은 다시 다음과 같이 4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으로 인한 어선소유권의 취득시: 어선가액의 1,000분의 5

② 증여, 유증(遺贈) 기타 무상으로 어선소유권의 취득시 : 어선가액의 1,000분의 10

③ 위 ①호 및 ②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어선소유권의 취득(매매, 교환등)시 : 어선가액의 1,000분의 10

④ 위 ①호 내지 ③호의 어선이 여러사람의 공유물인 때 :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어선가액으로 하여 등록세율을 적용함.

둘째, 20톤미만 어선등록시의 등록세율 :

2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어선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2,0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신탁재산인 어선을 수입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어선가액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등록세의 납부절차

(1) 납세지

어선에 관한 등록세는 선적항소재지를 관할하는 도(道)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도지사가 과세권자입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2) 납부절차 및 방법

등록세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납부서를 갖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나 시·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에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한 등기시에는 납부서외에 선박국적증서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족세액의 추징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등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세를 적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납부부족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함께하여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보통 징수방법이란 세무당국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등록세에 관하여 보통 징수하는 예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차호에 계속>

漁船協會 業務와 관련된 不條理 申告는

會 長 室 7 8 2-9 7 8 0

常任監查室 7 8 2-9 7 8 2

監 查 室 7 8 2-3 8 4 7

韓 國 漁 船 協 會